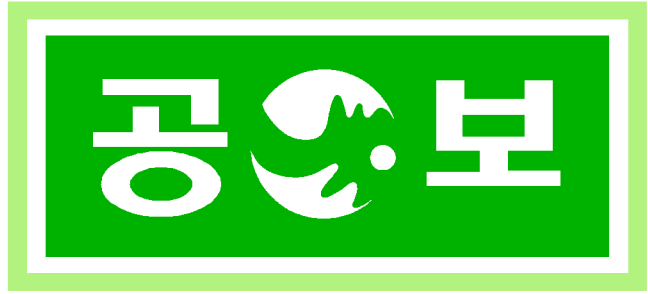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906 호 2014. 9. 15(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49호[농소3동 통 · 반 조정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0호[도로명주소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1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2호[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고시]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3호[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54호[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 고시] 8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37호[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장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9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48호[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50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 공고] 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52호[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2

안 내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관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149호

농소3동 통·반 조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통·반 조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일자 : 2014. 9. 15.

통·반 조정내역

구 분	통			반			비 고
	현 행	조 정	증 감	현 행	조 정	증 감	
계	216	216	-	1,929	1,933	증 4	
농소1동	27	27	-	314	314	-	
농소2동	35	35	-	384	384	-	
농소3동	39	39	-	423	427	증 4	
강 동 동	21	21	-	77	77	-	
효 문 동	30	30	-	251	251	-	
송 정 동	22	22	-	216	216	-	
양 정 동	20	20	-	123	123	-	
염 포 동	22	22	-	141	14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50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2길 14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지구 10B 11L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2길 14	2014-09-15	수동마을 명칭을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2013-12-30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2-12	울산광역시 북구 봉대8길 45	2014-09-15	기초회원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봉대로에 붙기하므로 일괄번호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65-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98	2014-09-15	호계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호계동과 이름을 관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지번정정 865-3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5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 울산광역시 복구 수동3길 5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호수지구 19B 6-1L	수동5길 25	수동3길 5	2014.9.15	건물번호 변경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9.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52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이옥희, 이정애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95, 205동 60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97, 102동 701호					
점용위치	신천동 234-51번지	점용면적 (㎡)	13			
점용목적	진입로 포장 (콘크리트 포장)	점용기간	2014. 9. 15 ~ 2015. 8. 3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신천동	234-51	천	13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4 - 153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 명	(주)세일지오텍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 88 신원비전타워 311호					
점용위치	연암동 159-2번지	점용면적 (㎡)	1			
점용목적	인공구조물 설치 (지하수 모니터링)	점용기간	2014. 9. 15 ~ 2018. 12. 3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인암동	159-2	천	1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4 - 154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김문수, 김유금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 29-4					
점용위치	연암동 1340-2번지	점용면적 (㎡)	8			
점용목적	진입로 포장 (쇄석 깔기)	점용기간	2014. 9. 15 ~ 2018. 12. 31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북구	연암동	1340-2	구	8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3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를 가족중심 커뮤니티 및 친환경 체험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 나.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이용시간, 프로그램 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7조)
- 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자원봉사자 및 어린이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참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처 : 우 683-707/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참여과
(☎ 052-241-8092, fax 052-241-726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4. 기타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문은 우리 구 주민참여과과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방문 열람도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시설 명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에 둔다.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놀이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놀이터 운영 및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놀이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놀이터의 시설 점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시 휴관일을 정하는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① 놀이터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 안전 유지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를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강사에게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봉사활동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어린이자문단) ① 구청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 증진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어린이자문단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장의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 안전유지를 위해 입장시간 및 입장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다만, 시각 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놀이터 시설 및 기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운영 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748호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도서관운영 업무보조)

2014년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도서관 운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기간	근부서	비고
도서관운영 업무보조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대출만남 ● 서가 정리 등 	'14. 10. 1. ~ '14. 12. 31. (3개월)	농소3동 도서관	

2. 응시자격 및 제한

채용분야	자격기준
도서관운영 업무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경력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모집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기 간 : '14. 9. 16. ~ 14. 9. 21. (18:00한)
- 장 소 : 농소3동도서관 1층 사무실(☎ 052-241-7440)
- 접수방법 : 개별 방문 접수

나.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함
- 서류심사(1차) : 2014. 9. 23.(서류심사 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2차) : 2014. 9. 24.(필요시)
- 최종합격통보 : 2014. 9. 25.(최종합격자 개별통지)

4. 응시자 제출서류

- 가. 이력서(사진 부착) 1부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대상자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라. 최근 2년 이내 도서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www.1365.go.kr)에서 발급
 마. 기타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근로조건

분 야	근무요일 및 시간	보 수	수 당
농소3동도서관 운영 업무 보조 (주간 1명)	· 근무요일: 화~금 4일 토·일 중1일 · 근무시간: 09:00~18:00	· 41,680원/1일	· 가족수당 · 부대비용(교통비, 급식비) *부대비용 제외대상 -1개월 미만 근무자 -1개월 이상 근무자라도 1일 6시간 미만 근무자는 교통비만 지급
농소3동도서관 운영 업무 보조 (야간 1명)	· 근무요일: 주간과 동일 · 근무시간: -평일:18:00~22:00 -토·일요일: 주간과 동일	· 평일: 20,840원/4시간 · 토·일요일: 41,680원/1일	
농소3동도서관 운영 업무 보조 (주말 1명)	· 근무요일: 토·일요일 · 근무시간: 09:00~18:00	· 41,680원/1일	

6.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도서관(☎ 052-241-744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공고 제2014-750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건 명 :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매 단가 계약
- 나. 내 역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및 보건복지부 환자진료지침 2002년 개정판에 등재된 품목 중
필요 의약품
- 다. 추정예산 : 금33,172,500원(금삼천삼백일십칠만이천오백원)
- 라. 기초금액 : 금33,17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입찰은 추정예산액을 기초금액으로 하며, 품목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되,
계약단가는 예정가격대비 낙찰율을 품목별 적용하며,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14. 9. 26.까지
- 바. 납품장소 : 북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단가입찰, 전자입찰)

2. 입찰서제출

- 가. 제출기간 : 2014. 9. 13(토) 14:00 ~ 2014. 9. 15(월) 14:00
-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유자격자로서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
기준)적격업소이어야 합니다.
-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
가 울산광역시내에 있는 업체
- 다. 견적제출일 전일현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

에 의하여 G2B목록번호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전일 현재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수수료 납부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입찰 참가수수료면제

5.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 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호(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14. 9. 15(화) 15:00

나. 개찰장소 : 북구보건소 입찰집행관 PC

다. 총액(단가)입찰, 전자입찰, 제한 최저가낙찰제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사양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결과 낙찰업체는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북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임현주(☎ 241-8113)
- 약품내역에 관한 사항 북구보건소 예방접종담당 김승희(☎ 241-824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업체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2014년 9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경리관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에 따른 규격요구서

1. 건 명 : 2014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2. 구입 품 명 :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전 품목 중 필요 의약품
3. 소요 예산 : 33,172,500원
4. 구매예상세부내역
 - 가. 의약품 종류 : 보건복지부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및 보건복지부 환자진료지침 2002년 개정판에 등재된 전 품목 중 약사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된 제품
 - 나. 연간구매예상액 : 33,172,500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
 - ※ 구매물품의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보건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하더라도 계약단가대로 공급합니다.
 - 다. 단 가 : 보건복지부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 표』에 의함
 - 라. 본소가 요청한 의약품만 반드시 납품한다.
5. 구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4. 9. 26.까지
6. 납품장소 : 북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7. 납품자격 : 약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한 유자격자로서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적격업소이며, 마약류취급허가증을 취득한 업체로 납품장소 및 납품 일까지 납품 가능한 자
8. 납품조건
 - 가. 납품은 당 사업소의 요구에 따라 분할 납품하고 납품장소는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 나. 납품지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토록 하고, 긴급을 요할 때는 즉시 납품한다.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의 개정이 있을 시는 개정 의약품의 단가에 낙찰가를 적용하여 납품한다.
- 라. 구매예정약품의 품목과 수량은 납품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함.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

(단위 : 원)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비고
				시중물가 조 사	조 달	최 저 단 가	금 액	
인플루엔자 백신	0.5ml/PFS	개	4,423	7,500원	7,500원	7,500원	33,172,500원	단기간 다수 사용으로 인해 작성량의 따른 수급이 필요함
		이	하	여	백			
공급가액 (부가세포함)							33,172,500원	

작성자 직 : 보건 9급 성명 : 김 승 희 (인)

확인자 직 : 보건 6급 성명 : 전 옥 희 (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 - 752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개정이유

가. 작은도서관 조성과 운영 지원 확대로 이동도서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2014. 1. 2.(목)로 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이동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도서관 명칭이 기재된 부분 삭제(제16조제1항제3호)

3. 근거법규

가. 「작은도서관진흥법」 제3조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0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도서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683-805/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중앙도서관
(전화번호 : 052-241-7412, 팩스번호 : 052-241-7409)

6. 참고사항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동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관외대출) ① (생 략)</p> <p>1. ~ 2. (생 략)</p> <p>3. 지역의 균형적인 독시문화 진흥을 위한 <u>이동도서관</u>,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p> <p>4. (생 략)</p> <p>② (생 략)</p>	<p>제16조(관외대출)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_____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